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8-24

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5구단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15. 6. 2.

판 결 선 고 2015. 7. 1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4. 12. 16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(소장 청구취지의 '2014. 10. 16.'은 '2014. 12. 16.'의 오기로 보인다).

이 유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8-24

이 사건에서 당초 피고는 망 B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가 2014. 2. 3. 사망하였고, 망인 소유의 [redacted]구 C건물 [redacted]호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자녀들인 나머지 선정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2014. 12. 16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취득세 합계 4,414,770원(가산세 포함)을 부과·고지하였다가 2014. 12. 22.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을 1-1~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우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8-24

선 정 자 목 록

1. A

2. D

3. E

4. F

끝.